



신체적 학대
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

성적 학대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
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


방임

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노인 학대 사례를 발견한다면??

노인 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,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(1577-1389),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또는 수사기관(112)에 신고하시면 됩니다.

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(24시간 상담) 1577-1389 또는 129

신고자의 비밀보장 :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.(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 제 3항)